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3호 2020. 10. 22.(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54호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사천시 규칙 제755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278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 8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287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사천시 공고 제1291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4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규칙 제75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한 건당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 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②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11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도 제1항과 같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개정안]

< 별표 1 >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칭	시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복지국장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u>기획예산담당관</u>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u>경리팀장</u>	<u>의정팀장</u>	<u>지출업무담당 팀장</u>
수 입 금 출 납 원	<u>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팀장</u>	<u>세입업무담당 팀장</u>	<u>세입업무담당 팀장</u>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의 사무업무담당 팀장	-	각 과 사무업무담당 팀장
세 입 세 출 납 의 원	<u>지출업무담당자</u>	<u>지출업무담당자</u>	<u>지출업무담당자</u>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관 직 명	그밖의 관서·임시관서	읍·면·동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로 제한)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관서의 장	-	-
<u>총 괄 기 금 관 리 관</u>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u>지출업무담당 팀장</u>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u>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팀장</u>	세입업무담당 팀장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u>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 팀장(담당자)</u>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u>재무업무담당자</u>
세 입 세 출 외 원	<u>서무업무담당자</u>	<u>지출업무담당자</u>	
현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개정안]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부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다른 사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규칙 제75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4일”을 “7일”로 한다.

제3조 중 “허가일로부터 7일”을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78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덕진교 재가설(시도6호선)]

「도로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10. 22.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번호 (노선명)	시도6호선 (곤양 서정 ~ 곤양 검정)
도로공사의 종류	“덕진교 재가설”을 위한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신청인 : 대진산업단지(주)]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892-55번지 일원(덕진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착수예정일 : 2020. 10. 22. 준공예정일 : 2021. 6. 30.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대진산단 추진 및 교량 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각종 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덕진교 재가설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0. 10. 22. 준공예정일 : 2021. 6. 30.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87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693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 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85, 팩스번호: 055-831-6063)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으로, “포함한” 을 “포함하여” 로, “단,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를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u> 장,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u>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단, 양성</u> <u>위원 비율을 고려하여</u>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u>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u> <u>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u> <u>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기획예산</u> <u>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u> <u>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u> <u>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u> <u>공무원 1명,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u> <u>견이 있는 인사 5명, 시민사회 단체</u> <u>대표자 1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u> <u>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u> <u>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u> <u>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u> <u>차례 연임할 수 있다.</u></p> <p>⑤ (생 략)</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u>위원</u>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하여</u> ----- . <u>다만, 위촉</u> <u>직 위원 중</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u> <u>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문화</u> <u>관광국장, 기획예산담당관</u></p> <p>2. <u>위촉직 위원</u></p> <p>가. <u>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 <u>2명</u></p> <p>나. <u>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u> <u>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u> <u>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u> <u>는 사람 5명</u></p> <p>라. <u>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명</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u> <u>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u>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u> <u>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u> <u>으로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공고 제2020-1291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자녀 직원 자녀의 지원방안 및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책 마련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 종류 추가(안 제7조)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및 변경(안 제7조제14호 및 제15호)

- 다자녀(2자녀 이상)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설
-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 693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

[우편번호:52539/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행정과),

전화:055)831-2580, FAX:055)831-6021]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로,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
지에” 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원활이” 를 “원활히” 로 한다.

제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
금 지원

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7항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u>원활</u>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 ----- <u>원활</u>히 ----- -----. 5. (현행과 같음)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3. (생 략)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3. (현행과 같음)
<p><u><신 설></u></p> <p><u>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u></p>	<p><u>14. 다자녀(2자녀 이상을 말한다) 직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u></p> <p><u>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p> <p>⑦ 그 밖에 위원회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운영</u>에 ----- -----.</p>

사 천 시 공 보

제693호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